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 (Hi2410)

년 현대해상

특별약관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이라 함은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보통약관을 말합니다.

2. 반려견관련 특별약관

2-0 반려견관련 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의 질병 또는 상해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견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견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의 소유자에 한합니다.

용 어	정 의
반려견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견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犬)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개(犬)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가.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10세를 초과하는 개(犬) 나. 판매점,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개(犬) 다.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 목적의 개(犬)(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라.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마.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犬)

2. 지급사유 및 보상관련 용어

용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견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 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발생하는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 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 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 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상비율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곱해져 보상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기타 특별 약관

2-1 반려견의료비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려견 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 반려견 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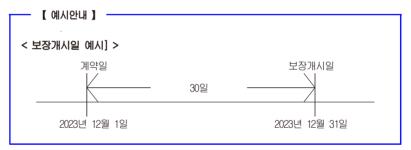
2-1-1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입원을 동반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반려견입원의료비보험금(이하 "입원의료비보험금"라 합니다.)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입원의료비보험금은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에서 1일당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80%/90% 중 택1)을 곱한 금액이며 1일당 보상한도액을 입원의료비보험금의 1일 지급한도로 합니다.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및 1일당 보상한도액은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및 금액이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입원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의 통원의료비보험금와 합산하여,

구분	1일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일반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중 택1	여가
208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00만원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0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1,000만원
고보장형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50만원	/5만원 중 택1	

③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예시)>

- 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형, 보상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35만원
 - ·지급금액 = [(35만원 3만원) x 7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 15만원
- ② 수술을 한 경우 (고보장형, 보상비율 9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22-10-01 13만원, 2022-10-02 수술 153만원
 - ·지급금액 = [(13만원 3만원) x 90%, 30만원] 중 적은 금액
 - + [(153만원 3만원) x 90%,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9만원 + 135만원 = 144만원
- ⑤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반려견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정의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관련법규 】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는 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 마
- 9.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반려견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심장사상충)감염증, 광견병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 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견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 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 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사이토포인트
- ③ 회사는 가입한 반려견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2.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2-1-2 반려견통원의료비Ⅱ(갱신형)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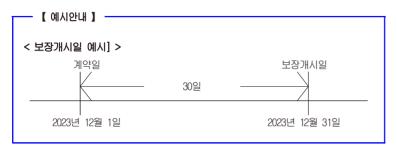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 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입원을 동반하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 의 의료비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반려견통원의료비보험금 (이하 "통원의료비보험금"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원의료비보험금은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에서 1일당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80%/90% 중 택1)을 곱한 금액이며 1일당 보상한 도액을 통원의료비보험금의 1일 지급하도로 합니다.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및 1일당 보상한도액은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및 금액이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통원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의 입원의료비보험금와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1일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일반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중 택1	여가
일반영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00만원		
고보장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0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1,000만원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50만원	/5만원 중 택1	

③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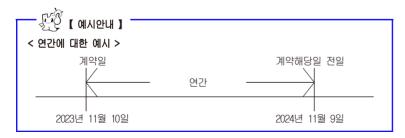
【 예시안내 】

<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예시)>

- 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형, 보상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35만원
 - ·지급금액 = [(35만원 3만원) x 7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5만원
- ② 수술을 한 경우 (고보장형, 보상비율 9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22-10-01 13만원, 2022-10-02 수술 153만원
 - ·지급금액 = [(13만원 3만원) x 90%, 30만원] 중 적은 금액
 - + [(153만원 3만원) x 90%,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9만원 + 135만원 = 144만원
- ⑤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반려견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당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정의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관련법규 】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는 각종 할인 및 강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9.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반려견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산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 의 질병
-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심장사상충)감염증, 광견병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 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견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 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 요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 조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사이토포인트
- ③ 회사는 가입한 반려견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2.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2-2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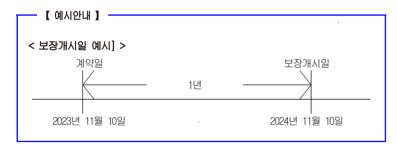
- 반려견 입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
- 반려견 통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

2-2-1 반려견입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2-1 반려견의료 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2-1-1 반려견입원의료비미(갱신형)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 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견 입원 의료비를 반려견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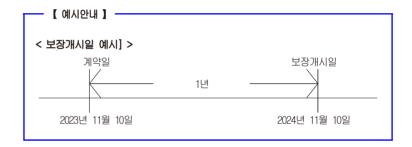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견입원의료비Ⅱ(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1 반려견의료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2-2-2 반려견통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2-1 반려견의료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2-1 반려견의료 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2-1-2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 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견통원의 료비를 반려견통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2-2-1 반려견입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2-2-2 반려견통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

2-3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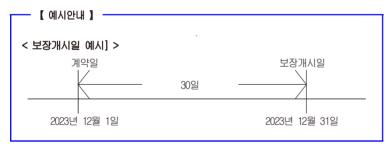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려견 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교및구강질환)(갱신형)
- 반려견 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2-3-1 반려견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2-1-1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 및 구강질환을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견 입원의료비를 반려견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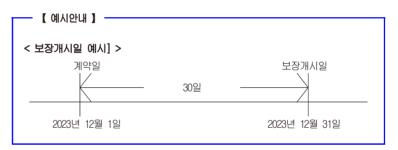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2-3-2 반 려견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2-1 반려견의료비॥ (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견입원의료비॥(갱

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2-3-2 반려견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2-1 반려견의료 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2-1-2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 및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견통원의료비를 반려견통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2-3-1 반려견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반려견사망위로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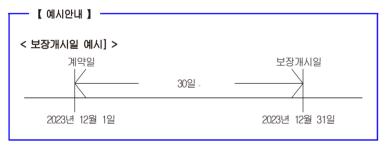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반려견 사망위로금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LICI.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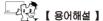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 한 특성에 의한 사고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찍는 것 또는 방사는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 만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 한함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2-5 반려견배상책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용 어	정 의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 의해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해당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 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상 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이라 항은 타인과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을 말 합니다.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은 제외)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특별약 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부험자가 제10조(소해방지의무) 제1항 제1항의 소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소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 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의하여 가중된 배상
-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가입 반려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5. 가입 반려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징벌적 손해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 다.
- 2.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10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미리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1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피해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금액 등이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사는 피 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대하는 등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

행합니다.

- 【 용어해설 】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 (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부형자가 손해배상을 할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 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4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기타 특별 약관